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방 감사를 위하여 국방부 감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0호 중 “검찰기관”을 “수사기관 및 공소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직무감찰담당관·종합감사담당관·사업감사담당관 및”을 “감사총괄담당관·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 및”으로, “직무감찰담당관·종합감사담당관·사업감사담당관은”을 “감사총괄담당관·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감찰담당관”을 “감사총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체감사계획의 종합 수립·조정 및 통제

3의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에 대한 자체복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3의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에 대한 하명·이첩·민원 관련 복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제6조제3항제4호 중 “감사자료”를 “자체감사 관련 감사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자율공직기강확립”을 “공직기강확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감사담당

관”을 “감사1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감사”를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1의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단체에 대한 하명·이첩·민원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의 수립·실시

10.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자료의 수집·관리·전산화

11.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관리·전산화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감사담당관”을 “감사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

- 단체에 대한 하명 · 이첩 · 민원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의 수립
-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자료의 수집 · 관리 · 전산화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관리 · 전산화

6. 국방신고 처리에 관한 업무

제9조제9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
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 · 통제

20.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 · 통제 및 미국 · 유엔군사령부와
의 협의

21.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 · 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
회와의 협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법무관리관) ①·② (생략)	제5조(법무관리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일반 사법 및 <u>검찰기관</u> 과의 협조	10. ----- <u>수사기관</u> 및 <u>공소청</u> ----- ---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관) ① (생략)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 밑에 <u>직무감찰담당관</u> · <u>종합감사담당관</u> · <u>사업감사담당관</u> 및 <u>국방민원센터장</u> 각 1명을 두되, <u>직무감찰담당관</u> · <u>종합감사담당관</u> · <u>사업감사담당관</u>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	② ----- <u>감사총괄담당관</u> · <u>감사1담당관</u> · <u>감사2담당관</u> 및 ----- ----- <u>감사총괄담당관</u> · <u>감사1담당관</u> · <u>감사2담당관</u> 은 ----- ----- ----- ----- ----- ----- ----- ----- -----

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 2. (생략)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신설>

<신설>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5. ~ 9. (생략)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10의2. ~ 13. (생략)

14.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15. (생략)

----.

③ 감사총괄담당관-----
-----.

1. · 2. (현행과 같음)

3. 자체감사계획의 종합 수립·조정 및 통제

3의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에 대한 자체복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3의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에 대한 하명·이첩·민원 관련 복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4. 자체감사 관련 감사자료-----

5. ~ 9. (현행과 같음)

10. 공직기강확립 -----

--

10의2.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5. (현행과 같음)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신 설>

2.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 9. (생략)

<신 설>

<신 설>

④ 감사1담당관-----.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의 수립·실시

1의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단체에 대한 하명·이첩·민원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 -----

3. ~ 9. (현행과 같음)

10.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자료의 수집·관리·전산화

11.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관리·전산화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에 대한 군수·정보화·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군수·정보화·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에의 검토

3. 군수·정보화·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4. 군수·정보화·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 하명·이첩·민원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5. 군수·정보화·시설·복지·

⑤ 감사2담당관-----
-----.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국군 부대·기관 중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관·부대·단체에 대한 하명·이첩·민원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의 수립·실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에의 검토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자료의 수집·관리·전산화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

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신 설>

⑥ (생 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⑧ (생 략)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통제

4. ~ 6. (생 략)

7.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미국·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8.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9. ~ 12. (생 략)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신 설>

<신 설>

결과 처분관리·전산화

6. 국방신고 처리에 관한 업무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9. ~ 12. (현행과 같음)

⑩ -----
-----.

1. ~ 18. (현행과 같음)

19.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통제

20.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및 미국·유엔군

<u><신 설></u> ⑪ ~ ⑳ (생 략)	<u>사령부와의 협의</u> <u>21.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u> <u>• 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u> <u>정전위원회와의 협의</u> ⑪ ~ ⑳ (현행과 같음)
--	---